

의안번호	2206494
의 퇴 인	최보운의원
회 답 일	2025.2.3.
추계번호	24D5902
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

국회예산정책처
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피치료감호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802만원, 2027년 791만원, 2028년 807만원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,400만원(연평균 480만원)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: 2026~2030년

(단위: 만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피치료감호자 선거권 부여 (안 제64조)	802	791	807	-	-	2,400	480

주: 일정한 가정 하에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투표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 47조(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 정지)제2호	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될 때까지 정지되는 피치료감호자의 자격에서 선거권을 삭제함	-

III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 47조(치료감호의 선고와 자격 정지)제2호	○	-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개정안에 따른 피치료감호자의 선거는 거소투표를 통해 진행하는 것으로 가정함¹⁾²⁾
- 투표율은 투표자가 피치료감호자인 점과 거소투표임을 고려하여 90%로 가정함³⁾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거소투표용지 우편료에 한정하고, 거소투표용지 발송 인부임, 봉투 및 투표용지 제작비용 등은 전체 거소투표 신고인수 대비 피치료감호자수 비율⁴⁾을 고려하면 별도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추계에서 제외함
-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를 적용함⁵⁾
-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- 임기만료에 따라 실시되는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, 2027년 대통령선거,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비용을 추계함

1) 「공직선거법」 제38조(거소·선상투표신고) ①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또는 제5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(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제외한다)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·시·군의 장에게 서면이나 해당 구·시·군이 개설·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(이하 "거소투표신고"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 우편에 의한 거소투표신고는 등기우편으로 처리하되, 그 우편요금은 국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.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거소(제6호에 해당하는 선원의 경우 선상을 말한다)에서 투표할 수 있다. 1. (생략)

2. 병원·요양소·수용소·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

3.~5의2. (생략)

2) 치료감호시설 내 투표소는 미설치 상태임

3) 참고로 21대 국회의원 선상투표 투표율은 91.7%임

4) 제22대 국선 거소투표신고인수(79,370명) 대비 예상 피치료감호자수(791명) 비율은 0.99%임

5)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(2024.10.)

	2024	2025	2026	2027	2028	2029	2030
소비자물가상승률(%)	2.5	2.1	2.0	2.0	2.0	2.0	2.0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가.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

□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피치료감호자 거소투표 실시에 따른 선거 인원을 추정하고, 거소투표 발송·회송 우편료 비용을 추계함

- 선거 인원은 최근 3년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피치료감호자 수의 연평균에 투표율(90%)을 곱하여 712명으로 추정함
 - 현재 치료감호시설⁶⁾은 국립법무병원(충청남도 공주시 소재)과 5개의 지정 법무병원(서울, 춘천, 공주, 부곡, 나주)이 있으나, 2020년 이후 지정법무병원에 수용 중인 피치료 감호자는 없음

[표 2] 최근 3년간 만 18세 이상 피치료감호자의 수: 2022~2024년

구분	2022	2023	2024	평 균
인원	793	787	793	791

자료: 법무부

- 2025년 기준 거소투표용지 우편료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함
 - 발송: 4,420원(등기/규격외/800g 기준)+2,000원(특수취급우편수수료)
 - 회송: 2,620원(등기/규격외/50g미만 기준)+2,000원(특수취급우편수수료)

[표 2] 피치료감호자 거소투표 비용: 전국동시지방선거

구분	수량 (a, 개)	단가(b, 원)		소요비용 (a×b×c, 만원)
		2025	2026	2026
투표용지 발송 우편료	712	6,420	6,548	466
투표용지 회송 우편료	712	4,620	4,712	335
합 계				802

주: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6) 제16조의2(치료감호시설)① 제16조제1항에서 “치료감호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

1. 국립법무병원
2. 국가가 설립·운영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중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

나. 2027년 대통령선거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피치료감호자 거소투표 실시에 따른 선거 인원을 추정하고, 거소투표 발송·회송 우편료 비용을 추계함
 - 선거 인원은 최근 3년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피치료감호자 수의 연평균에 투표율(90%)을 곱하여 712명으로 추정함
 - 2025년 기준 거소투표용지 우편료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함
 - 발송: 4,060원(등기/규격외/650g 기준)+2,000원(특수취급우편수수료)
 - 회송: 2,620원(등기/규격외/50g미만 기준)+2,000원(특수취급우편수수료)

[표 3] 피치료감호자 거소투표 비용: 대통령선거

구분	수량 (a, 개)	단가(b, 원)		소요비용 (a×b×c, 만원)
		2025	2027	2027
투표용지 발송 우편료	712	6,060	6,305	449
투표용지 회송 우편료	712	4,620	4,807	342
합 계				791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다. 2028년 국회의원선거

-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피치료감호자 거소투표 실시에 따른 선거 인원을 추정하고, 거소투표 발송·회송 우편료 비용을 추계함
 - 선거 인원은 최근 3년간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피치료감호자 수의 연평균에 투표율(90%)을 곱하여 712명으로 추정함
 - 2025년 기준 거소투표용지 우편료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함
 - 발송: 4,060원(등기/규격외/650g 기준)+2,000원(특수취급우편수수료)
 - 회송: 2,620원(등기/규격외/50g미만 기준)+2,000원(특수취급우편수수료)

[표 4] 피치료감호자 거소투표 비용: 국회의원선거

구분	수량 (a, 개)	단가(b, 원)		소요비용 (a×b×c, 만원)
		2025	2028	2028
투표용지 발송 우편료	712	6,060	6,431	458
투표용지 회송 우편료	712	4,620	4,903	349
합 계				807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라. 추계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피치료감호자를 대상으로 거소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6년 802만원, 2027년 791만원, 2028년 807만원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2,4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

[표 5] 피치료감호자 거소투표 비용: 2026~2030년

(단위: 만원)

구 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
2026 전국동시지방선거	802	—	—	—	—	802
2027 대통령선거	—	791	—	—	—	791
2028 국회의원선거	—	—	807	—	—	807
합 계	802	791	807	—	—	2,400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보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강아름	김안나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강아름	02-6788-4664	krm7839@nabo.go.kr